이 유

1. 당사자 주장

가. 신청인 주장

- 신청인은 1996년 12월부터 이곳에서 거주중이며, 피신청인이 2017.5월경 이사온 후부터 극심한 소음피해가 발생됨
- 청소기 소음은 어쩔 수 없지만 매일같이 가구를 끄는 소리 밤 12시에 청소기 돌리는 소리, 아이의 발 구르고 공 굴리는 소리, 뛰는 소리 등 피해가 있음
- 피신청인(남자)이 새벽1시, 주말엔 3~4시까지 쿵쿵 걸으며 현 관문, 중문 쾅 닫는 소리 등 발생함
- 피신청인(여자)는 새벽시간대 뭔가 옮기고 쿵쿵거리고 걸으며, 가구를 옮기는 소리, 낙하음, 두들기는 소리를 발생함
- 경비실을 통해 소음자제를 권유하거나, 저희 집에서 천정에 막대 기로 두들기는 행동하면 바로 보복소음으로 이어짐
- 2019.1.11.일과 15일 새벽 두 차례 보복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또한 중학생의 악의적인 보복행위도 여러차례임
- 셀 수 없는 소음과 난동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, 숙면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수면시간도 갖지 못함
- 피신청인은 소음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으며, 경찰이나 이웃 사이센터 등에 거짓과 변명으로 기망하고 신청인에게 사과나 반 성의 조치 및 행동이 없어 분노를 가지게 됨
- 스트레스로 인한 약물처방도 받고 귀트임도 생겨 예민해지고 소음 으로 시달리는 나 자신에 대한 짜증으로 우울증과 불안감도 심해져 몸 상태가 악화됨

나. 피신청인 주장

- 피신청인 가족은 2005년부터 동 아파트에 이사를 오기 전까지 다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당한 적이 없음
-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은 바로 윗집 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으며, 층간 소음 기준은 주야간 일정 소음수치의 기준이 있으며, 통상적으로 이해 가능한 예의 시간대들이 있을 것이나 신청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가 지 우개를 떨어뜨리는 작은 소음에도 문제를 삼고 보복소음으로 저 희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괴롭혀 왔으며, 오히려 피신청인 가 족이 어디에 호소도 못하고 2년을 지내왔음
- 주말 및 방학을 제외하고는 오후4시까지 피신청인 아내외엔 집안에 있는 가족이 거의 없으며, 특히 신청인의 윗방에 있는 아이는 학원 관계로 오후11시경 귀가해 사용시간이 1~2시간 내외임
- 지난 2년간 신청인을 지켜본 결과, 신청인은 특별한 직업없이 거의 온종일 신청인 세대에 상주하는 등 보통의 세대와는 다른 패턴을 가짐
- 신청인은 피신청인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단발성 소음에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보복소음을 보내고 있음. 또한 피신 청인 세대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집착성 강박증상이 보이는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보다 피신청인 세대의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한 실정이며,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
- 한 낮에 2~3보만 걷거나 의자 등이 끌리면 비정상적이고 악의 적인 소리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낮에 돌아가는 청소기 소리 에도 보복용 우퍼를 이용하는 등 심각한 난동을 부림
- 신청인은 피신청인 세대의 모든 공간에 발생하는 소음만을 주시

하고 방, 거실, 베란다, 주방 등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대해 보복용 우퍼를 이용하여 아이 방으로 집중적으로 난사하면서 난 동을 부리는 등 비인격적 성향의 집착성 행동을 해 그 방을 사용 하는 아이의 경우는 다른 가족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막대함

- 피신청인의 작은 소음에도 벽을 치고, 막대기로 천장을 치고, 스 피커(보복소음용 우퍼로 의심)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복하여 다른 주변 세대들에서도 민원을 제기할 만한 소음이 많았음
- 2019.2.21. 오후3시부터 신청인 세대의 보복성 소음은 일체 중단됨. 본인이 재정신청 접수 후 문제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든 소음과 장비를 제거 및 중단한 것으로 보임

2. 사실조사 결과

가. 분쟁지역 개황

○ 당사자 주거공간은 일반주거지역이며 공동주택(아파트) 밀집지역 으로 형성되어 있으며, 주변에 2차선 도로가 있으나 교통소음의 영향이 거의 없는 정온한 환경임

나. 현지조사 결과

○ 당사자 주거 공간은 건축된 지 23년이 경과된 아파트로, 문 여닫는 소리, 성인의 보통 걸음 소리, 식탁의자 끄는 소리 등 불가피한 생활소음 등이 아래층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특성을 보였음

3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

가.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평가

- 1) 층간소음 측정자료, 당사자 제출자료,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고자 함
- 2) 층간소음 측정결과

가) 측정일시 : 2018.04.06.(금). 17:21 ~ 2018.04.08.(일) 12:48

나) 측정기관 : 000보건환경연구원

다) 측정위치 : 1212호 거실

라) 측정구분 : 직접 충격소음 분석

마) 주요 소음원은 바닥충격음, 낙하인 것으로 분석됨

4. 판단

가.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

○ 2018.04.06.(금). 17:21~2018.04.08.(일) 12:48 까지 층간소음 측정결과 최고소음도가 50dB(A) 이상으로 측정된 횟수는 총 26회(주간 16회, 야간 10회)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볼 때 신청인의 층간소음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,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, 당사자들이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된 지 23년 경과된 아파트로 문 여닫는소리,성인의 보통 걸음 소리,식탁의자 끄는소리 등 불가피한 생활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특성을 보이는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
5. 결론

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결과, 관련서류, 전문가 의견,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